

제260회 임시회

2007. 5. 14(월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자치위원회  
전문위원 연기봉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4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,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(안 제18조제2항)

-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임

나.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(안 제22조)

-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처리하여, 공직사회에 헌혈참여 확대 유도

다. 특별휴가에 '입양휴가제' 등 도입(안 제23조 및 별표)

-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

라.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(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)

-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·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

## 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(대통령령 제19723호, 2006.11.01)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도 조례에 반영하는 동시에, 현실에 맞지 않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일부를 조정<sup>1)</sup>하려는 것으로, 개정취지와 그 내용에 이견이 없음

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당초 2일에서 3일로 함(통상 3일장이 널리 행하여지므로 2일은 발인 및 장지동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)